- 서울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'신둔촌역' 제정에 관한 청원 -

심 사 보 고 서

접 수 번 호	80

2018년 2월 27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청 원 자 :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9길 16, 810호(성내동, 파크프라자) 최찬성 외 5,497명

나. 소개의원 : 박호근 의원(더불어민주당, 강동구 제1선거구, 행정자치위원회)

다. 접수일자 : 2017년 12월 4일

라.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6일

마. 상정일자

○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18년 2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청원요지

○ 2018년 10월 개통 예정인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9호선 3단계 922공구 937정거장 시설물의 재건축 사업부지내 이전설치 기부채납과 비용을 사업시행자(조합)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937 정거장에 대한 역명을 “신둔촌역”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함

3.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

○ 2018년 10월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정비계획 결정 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통해 당초 보도 상에 설치 계획되었던 지하철 9호선 922공구 937정거장의 시설물(출입구 및 환기구 등)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재건축사업 부지(공공공지) 내에 이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지하철 유관 부서(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) 간 협약 조건 등에 따라 이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

○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서 요구하는 937정거장에 대한 역명을 '신둔촌역'으로 정하여 주시길 적극 희망하오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림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) : '서울시지명위원회 조례'와 '지하철 역명 제·개정 절차 및 기준'에 따라 해당 자치구 제출 안건을 지리, 교통, 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2018년도 상반기 중 제정 추진 예정임

5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청원의 개요

○ 동 청원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지하철 9호선 937 정거장 시설물(출입구 및 환기구 등)을 재건축사업 부지(공공공지) 내에 이전 설치하고 기부채납 할 예정인 바, 937정거장 명칭을 '신 둔촌역'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○ 2018년 12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[1]은 2018년 2월말 현재 93.5%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, 동 청원의 대상이 되는 937정거장 출입구 등 시설물 중 일부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

○ 동 청원 내용인 역명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「지하철 역명 제·개정 기준 및 절차」[2]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,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지하철 역명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

---

1) 총 연장 9.18km(종합운동장~올림픽공원역~보훈병원), 정거장 8개소(환승역 2개소), 총사업비 1조 4,015억원

2) 교통정책과-14888(2017.12.28.), 지하철 역명 제·개정 기준 및 절차

□ **역명의 제정 기준**

○ **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,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**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.

1. 옛 지명, 법정동명, 가로명
2.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, 사적 등 문화재 명칭
3.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
4.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
5.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, **역사가 학교(특정시설)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**

한편 동 기준에서는 역명 제정을 위한 절차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, 해당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및 「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명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

따라서 향후 9호선 3단계 개통에 따라 각 역명을 제정할 시에 동 청원의 내용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역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【역명 제·개정 절차도】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

○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1. 의견서 : 붙임1

[붙임1]

채 택 의 견 서

□ 청 원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'신둔촌역' 제정에 관한 청원

□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장(도시교통본부)

□ 채택 의견

○ 동 청원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시설물(출입구 및 환기구 등)을 재건축사업 부지(공공공지) 내에 이전 설치하고 기부채납 할 예정인 바, 937정거장 명칭을 '신둔촌역'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

○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향후 9호선 3단계 개통에 따라 각 역명을 제정할 시에 동 청원의 내용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역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,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

<서식4-6-3> 청원요지서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80		접 수 연 월 일	2017. 12.4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강동구		
	성 명	최찬성 외 5,497명		
소개의원	박호근		소속위원회	행정자치
건 명	서울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“신둔촌역” 제정에 관한 청원			
소 관 위 원 회	교통			

○ **2018년 10월 개통 예정인 9호선 3단계 9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9호선 3단계 922공구 937정거장 시설물의 재건축 사업 부지내 이전설치 기부채납과 비용을 사업시행자(조합)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**

이에 조합이 요구하는 937 정거장에 대한 역명을 “신둔촌역”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함